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Legal Issues of Small Libraries

김 유 승 (You-Seung Kim)*

목 차

1. 들어가는 글	5.1 일반 현황
2. 선행연구 분석	5.2 근거 법령
3.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성격	5.3 정의
3.1 연혁	5.4 시설 및 장서 기준
3.2 현황	5.5 운영인력의 자격요건
3.3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	6.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과제
4.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분석	7. 맺는 글
5.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 분석	

초 록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 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small libraries by analyzing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s of small libraries and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libraries as a social m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braries Act, the legal status of small libraries are argued and other related regulation are also discussed. 114 municipal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small libraries are analyzed into five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conditions, related laws, definitions, facilities, and workforce. As a result,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legal issues on small libraries are provided in the three different aspects.

키워드: 도서관법, 도서관운동, 작은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 자치법규

The Library Act, Library Movement, The Promotion of Small Library Act, Small Libraries, Municipal Regulations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381-410,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3.381]

1. 들어가는 글

작은도서관이 급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2013, ii)의 『2012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3,951관에 달한다. 2010년 3,349관으로 집계되었던 것에서 2년 만에 602관이 늘어난 것이다. 폭발적 증가 추세다. 법령도 이를 뒷받침하였다. 2009년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 관련 규정이 등장한 이후,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단 9건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2014년 7월 현재 105건으로 증가하였다. 가히 작은도서관의 전성시대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의 성장이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작은도서관의 양적 확장은 작은도서관의 질적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재철 2013, 13).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인한 단기간의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다수의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2013년 9월, 작은도서관에 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작은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도서관계의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당수 작은도서관의 현실과, 작은도서관을 이전의 문고 또는 공부방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복합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도서관의 화려한 양적 성장 뒤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

에 따르는 문제들을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다음에서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고,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와 규정 등을 포함한 114건의 자치법규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1994년 『황해문화』 9월호에 실렸던 천경배의 『인천에 '작은도서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95년 『월간 말』에 소개된 작은도서관 전국협의회 관련 기사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지면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학술적 영역보다는 당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었던 다양한 정기간행물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후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작은도서관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현황 및 사례 분석 기반의 연구로부터,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을 다룬 연구,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을 접근한 연구, 협력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작은도서관을 다룬 연구,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분석한 연구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은 현황 및 사례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다. 초기 연구성과로는 전국의 문고 현황을 살피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정현태(200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영역의 후속 연구는 2010년

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전라북도 지역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김홍렬(2010b), 경남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상우, 오현석(2011), 경기도 지역 작은도서관 108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 지표 개선안을 제시한 안인자 외(2011),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통계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차성중 외(2012), 등급, 유형, 이용대상별로 22곳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운영담당자 면담을 실시한 조미아 외(2013), 안양시 소재 63개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강영인 외(2013) 등의 연구들로 이어졌다.

유사한 맥락에서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둔 연구성과로는 2007년, 2008년 연이은 김영석의 연구 등이 있다. 김영석은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2007)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2008)를 통해 시급한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의 하나로 작은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작은도서관의 조금 더 구체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서울시 소재 142관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핀 양병훈(2012), 작은도서관의 장서 개발, 운영, 평가 등을 논한 박영애, 이재윤(2010)과 장덕현(2011) 등의 연구 등이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 산하 구립 공공도서관 소속 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를 다룬 정다솜, 이은진(2013)의 연구가 있다. 그 외 용인시 지역 작은도서관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작은도서관의 지역공동

체 형성에 대한 기여를 연구한 양영균(2012)의 연구가 있다.

사회운동으로의 작은도서관을 다룬 연구로는 이진우(2006)의 ‘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의 실체와 공공도서관의 관련성’ 연구,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역할 변화 과정을 논하고 작은도서관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양재한(2008)의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 방안을 논한 박미라, 이응봉(2010)의 연구 등이 있다.

협력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작은도서관을 다룬 연구성과로는 공공도서관 협력네트워크의 한 구성요소로서 작은도서관을 논한 조윤희(2010)의 연구와 작은도서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다룬 이정호(2013)의 연구 등이 있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는 대부분 조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김홍렬(2010a),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 유양근, 박송이(2010), 관련 조례 분석을 기반으로 작은도서관 지원형태를 유형화하고 지원방법을 제안한 이승원(2011)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그 외 디자인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의 공간 특성을 살핀 조은길 외(2010),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김홍렬(2011), 기부금 유치를 통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노동조, 박경숙(2013)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에서 다수의 작은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들이 작은도서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관련 법령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던 연구들 역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 또한, 2010년 김홍렬과 유양근, 박양이의 연구가 각각 25건과 14건, 2011년 이승원의 연구가 46건의 조례를 연구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하여, 2014년 7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5건을 포함해 114건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성격を 논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반영한 법령과 조례를 정의, 시설, 장서, 인력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의의를 찾고자 한다.

3.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성격

3.1 연혁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그 연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연원을 마을문고로부터 찾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업대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마을문고운동이 1980년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주도의 관제 활동으로 변

질되고,¹⁾ 농촌공동체의 붕괴에 따라 급속히 쇠락한다. 이에 문고운동의 쇠퇴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문고와의 차별성을 모색했던 대안운동의 하나가 작은도서관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설립한 문고가 작은도서관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이다(양재한 2008, 28). 안찬수(2006)는 작은도서관을 기존 마을문고의 부실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정적 평가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자 하는 운동적 필요성에 의해 등장한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정현대(2006, 222)는 “마을문고운동의 관주도적 계몽운동을 주민 자치적 지역문화운동으로 개발”하였다는 점을 작은도서관운동의 차별성으로 주목한 바 있다.

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은 각각의 운영방식과 조직체계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임과 동시에, 시대 변화에 따른 도서관문화시설 발전의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전자가 중앙집권적 수직구조를 가진 관주도 운동이었던 반면, 후자는 수평적이고 자발적 운동의 개념이라는 명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후자의 출발점인 동시에, 후자가 전자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발전된 개념이라는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마을문고의 조직적 자산을 새마을문고가 물려받았다면, 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 기반의 독서문화운동이라는 시민 운동적 지향을 계승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작은도서관이 이어받고 있는 것이 마을문고의 것만은 아니다. 1970년대 말 도시형 지식공동체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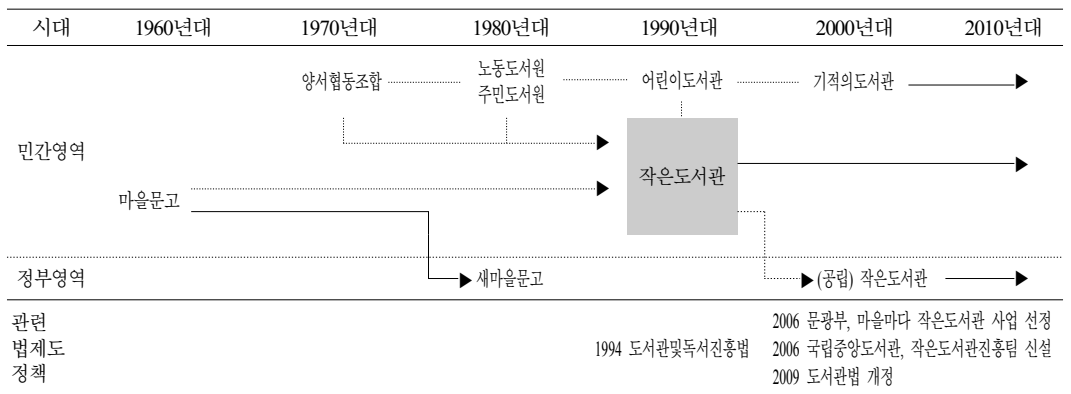
1) 이용남(2002, 102-103)은 마을문고운동의 확장성 제고와 지속적 재정난의 타개를 위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문교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마을문고가 새마을운동 체제에 흡수, 통합되는 촉진제로 작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향하며 부산을 시작으로 마산, 광주, 서울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던 양서협동조합운동, 1980년대 당시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노동도서관, 주민도서관 등의 소규모 도서관운동,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다양한 어린이도서관 운동은 오늘의 작은도서관이 있게 한 또 다른 동력이 되었다(이용재 2007, 13-16).

2000년대 이후 작은도서관의 급속한 성장은 어린이작은도서관운동으로부터 견인된다.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설립한 어린이도서관들과 에스콰이어재단이 후원한 인표어린이도서관 등이 민간영역의 역량으로 성장한 대표적 사례다. 더 나아가 '기적의 도서관'과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 등은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 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이연옥 2005, 311-321). 2001년 발족한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북스타트 운동'과 함께 '희망의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한다.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2003년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적의 도서관' 건립운동을 주도하고 시민단체 중심 도서관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부천지역의 '동네마다 작은도

서관만들기'는 지역도서관운동의 가능성 그리고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도서관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독서문화시설이라 규정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작은도서관이 민간영역에만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1992년 '중로도서관'이 산하 분관에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작은도서관은 공립의 영역으로 일찍이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민간영역에서조차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확산되기 이전이다. 작은도서관이 정부영역으로 본격 진입한 것은 2006년이다. 문화관광부가 주요정책과제의 하나로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선정하고 같은 해 4월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면서 정부주도의 작은도서관 확충운동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도서관법」의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규정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그림 1> 작은도서관 발전의 연혁

3.2 현황

정부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2013, 36)의 『2012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작은도서관은 2012년 기준 4,251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중 『도서관법』의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3,951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같은 기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libsta.go.kr>)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이 828관으로 집계된 것

과 비교할 때, 4.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1,628관의 작은도서관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작은도서관의 42.1%에 달하는 수치이나,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나타난 수도권 인구 비중인 49.4%에는 미치지 못한다.

2012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1관 당 평균자료 5,693권, 열람석 30.3석, 평균 면적 111.8㎡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기준²⁾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반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도 141관으로 집계되었

〈표 1〉 2012년 기준 지역별 작은도서관 현황*

지자체명	평균자료 (권)	평균열람석 (석)	평균면적 (㎡)	작은도서관 기준미달 (관)				설립 유형 (관)			전체
				자료	열람석	면적	계	공립(%)	사립(%)	전체	
서울특별시	7,897	27.3	99.0	-	3	26	29	198 (37.9)	324 (62.1)	522	
부산광역시	5,564	31.9	106.9	-	-	4	4	74 (36.1)	131 (63.9)	205	
대구광역시	6,194	30.3	109.6	-	1	-	1	34 (22.7)	116 (77.3)	150	
인천광역시	6,141	39.6	115.5	-	-	1	1	38 (22.5)	131 (77.5)	169	
광주광역시	3,549	26.2	84.7	1	-	-	1	23 (11.1)	185 (88.9)	208	
대전광역시	4,827	28.5	92.4	2	1	5	8	18 (10.8)	149 (89.2)	167	
울산광역시	4,978	29.6	100.4	1	-	-	1	26 (24.3)	81 (75.7)	107	
세종특별자치시	5,720	35.0	135.0	-	-	-	0	2 (100.0)	-	2	
경기도	6,165	28.8	111.5	5	4	18	27	170 (18.9)	728 (81.1)	898	
강원도	4,287	30.7	131.8	3	-	2	5	29 (18.7)	126 (81.3)	155	
충청북도	5,024	30.6	110.4	9	1	4	14	16 (10.1)	143 (89.9)	159	
충청남도	4,949	29.9	102.1	1	-	1	2	38 (20.7)	146 (79.3)	184	
전라북도	6,215	34.1	143.9	1	6	7	14	70 (38.0)	114 (62.0)	184	
전라남도	4,230	32.1	119.9	1	2	3	6	36 (18.3)	161 (81.7)	197	
경상북도	4,917	34.5	136.1	1	-	4	5	63 (34.6)	119 (65.4)	182	
경상남도	5,798	30.7	119.3	1	-	11	12	56 (17.0)	274 (83.0)	330	
제주도	3,533	35.8	129.9	6	2	3	11	3 (2.3)	129 (97.7)	132	
평균/계	5,693	30.3	111.8	32	20	89	141	894 (22.6)	3,057 (77.4)	3,95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2013, 34, 36, 47, 54, 58 재구성).

2)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천 권 이상, 건물면적 33㎡ 이상이다. 단,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표 2〉 2012년 설립 유형별 작은도서관 현황*

	평균 자료 (권)	평균 열람석 (석)	평균면적 (㎡)	지자체/ 공공도서관 지원	상호대차	순회사서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립	8,791	32.7	153.1	736 (82.3)	278 (31.1)	172 (19.2)	565 (63.2)
사립	4,795	29.6	99.7	1,622 (53.1)	125 (4.1)	257 (8.4)	1,528 (5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2013, 47, 54, 58, 72-74 재구성). ** (%)

다. 141관 중 면적 기준에 미달한 곳이 89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목할 점은 작은도서관 평균 면적이 2010년 181.6㎡, 2011년 112.2㎡, 2012년 111.8㎡로 지속적 감소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2013, iv). 이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열람석과 대조된다. 공간은 점점 좁아지는데 그 안의 열람석은 증가하는 현상이다.

한편,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의 전국적 비율은 2010년부터 약 20% 대 80%로 유지되고 있다. 앞선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에서 공립작은도서관은 22.6%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2012년 기준 공립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북도(38.7%)이다. 서울(37.9%), 부산(36.1%), 경상북도(34.6%)가 뒤를 이었다. 공립작은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32관 중 불과 3곳만이 공립작은도서관이다. 하지만 공립작은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 순회사서 서비스,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비율 등에서 모두 사립작은도서관을 앞서고 있다. 평균 자료와 평균 공용면적도 사립작은도서관의 1.8배와 1.5배에 달한다.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공립작은도서관이 82.3%인 것에 비해, 53.1%의 사립도서관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표 2〉 참조).

3.3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앞서 살펴본 작은도서관의 연혁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다양한 도서관운동의 지향과 성과들을 이어받은 사회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규모의 측면이 아닌 사회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준(2006)은 단순히 작은 규모의 도서관인 ‘작은 도서관’과 지역공동체로부터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는 기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띄어쓰기 방식부터 달리하여 구분하면서, 작은도서관은 시설의 개념이 아님을 주장한다. 우리말로 ‘작은 도서관’이라 직역될 수 있는 ‘Small Library’가 도시 외곽의 인구 저밀도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미국의 사례와 달리(이진우 2006, 158; 최미순 2006, 84), 우리의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작은 규모라는 의미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다.

정현대(2006, 222)는 작은도서관을 “민간의 사립문고 및 사립도서관 활동가들에 의해 조성된 일종의 도서관운동을 지칭하는 이념형적 명사”로 규정하였다. 작은도서관을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문화공간”이자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으로 정의한 김소희(2007, 19)

역시 작은도서관은 문고와 같은 시설 개념이 아닌 운동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재한(2008, 29-31)은 “작은도서관은 운동이다”라는 김소희의 언명을 공유한다. 작은도서관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또 다른 사회적 장치”로 규정하며, 이를 운영 중심의 특성을 가진 운동의 개념으로 보았다. 첫째, 지역 주민이 수혜자이자 주체로서 시설보다는 운영이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둘째, 지역 공동체, 지역문화, 지식의 평등화의 정신을 공유하는 운동의 개념으로 기존 문고와 차별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유양근, 박송이(2010, 176) 역시 작은도서관이 크기 및 시설 규모가 작다는 의미 이상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한다. 지식의 나눔을 통해 지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도서관의 기본 이념을 반영한 용어가 작은도서관이라고 주장한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민주주의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같이, 작은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윤명희 외(2011, 16)는 ‘규모’와 ‘지원·협력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의에 앞서 이념적 성격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운동의 장”으로 규정한다.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생적 시민운동이라는 것이다(이정호 2013, 150).

공사립문고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어린이도서관, 소규모 공공도서관 또는 분관 등에 이르기까지 시설의 규모, 설립 및 운영 주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작은도서관의 범주에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

이 사회 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은 생활에 밀접한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요구형 운동과 주민 일반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안제시형 운동을 넘어 스스로 지역문화를 가꾸고 만들어가는 높은 수준의 주민의식과 참여가 요구되는 주민공동체운동이다(양재한 2008, 25). 즉,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식정보와 문화를 나누고 만들어가는 공론장의 역할을 지향하는 도서관 운동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분석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법령은 첫째, 작은도서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을 명시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의 일반법, 둘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각종 규정 및 규칙, 셋째, 광역 및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작은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크게 구분된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역할, 기준을 포함한 정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에 제시되고 있다. 현행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작은도서관을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목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은 모든 관중을 망라한 도서관의 기본 이념이라는 점에서 「도서관법」

상 타 공공도서관과 차별되는 작은도서관의 두 가지 특징은 '생활권역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미달'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으로 이해되는 '생활권역에서의 서비스'는 타 공공도서관과 차별되는 작은도서관만의 가장 주목되는 특징이다.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최고의 강점이 지역주민 생활공간에 밀착된 문화공간으로서의 편의성과 접근성임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정현태 2010; 노동조, 박경숙 2013, 172; 남영준 외 2006).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1조 법의 목적을 통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이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임을 밝히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 미달하는 작은도서관”이란 규정은 1994

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 4746호) 제2조 제2호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 규정하면서, 문고를 도서관과 차별되는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2006년 전부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은 문고를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로 규정하면서, 이를 공공도서관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킨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2009년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일부개정을 통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이전 문고의 것을 그대로 준용한다(〈표 3〉 참조).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되었던 문고의 건물면적, 열람석, 자료 기준은

〈표 3〉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 정의의 변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법률 제4746호, 1994.3.24. 제정)	『도서관법』 제2조 (법률 제8029호, 2006.10.4. 전부개정)	『도서관법』 제2조 (법률 제9528호, 2009.3.25. 일부개정)
2. “문고”라 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은 부칙 제2항에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를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이 작은도서관의 법적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제11316호)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협력,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안 제안의 이유로 들고 있다(의안번호 14321).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제6조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제7조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8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제9조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0조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제11조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제12조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제13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앞서 논의한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 개념과 그에 따른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6조 제1항에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조항

은 강제력이 담보되지 않는 훈시 조항이다.

작은도서관의 시설을 규정한 관련 대통령령과 장관령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일부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1호, 2013.12.31.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8호 2014.3.24. 타법개정) 등이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3항 제3호는 500세대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주택단지에 구비되어야 할 시설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3호는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 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을 도서관 결정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은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의 한 분류인 도서시설에 문고를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된 「도서관법」을 반영하지 않아 여전히 ‘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2007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22호)로 제정되어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을 총 850만원 이상으로 정하였던 기준은 2013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45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밖에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09호 2014.3.14. 일부개정) 별표 6의2는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

〈표 4〉 작은도서관 관련 시행령, 규칙, 규정

관련영역	법령명	내용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3. 도서관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지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 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행령」(대통령령 제25367호 2014.6.3. 일부개정) 별표 1은 공공도서관과 문고의 설립 및 운영이 광역시·도와 기초단위 시·군·자치구의 관장 사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의 육성과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표 4〉 참조).

5.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 분석

2014년 7월 현재 안전행정부 자치법규시스템(<http://elis.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되는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5건, 조례 시행규칙 2건, 규정 7건 등 총 114건이다. ‘작은도서관’이라는 키워드로 자치법규시스템에서 110건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16건이 검색되었다. 116건 중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를 제외하고,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제정 조례와 2012년 일부개정 조례가 중복 검색된 것 중 최신 조례만을 채택하여 최종 114건이 남았다. 이 114건 중 110건은 자치법규시스템의 검색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검색된 4건은 모두 경기도 산하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였다.

다음에서는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114건의 일반 현황과 근거로 삼고 있는 상위 법령을 살펴보고,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정의, 시설 및 장서, 운영인력 기준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14건의 상세 목록은 〈표 5〉와 같다.

다음에서는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114건의 일반 현황과 근거로 삼고 있는 상위 법령을 살펴보고,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정의, 시설 및 장서, 운영인력 기준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114건의 상세 목록은 〈표 5〉와 같다.

〈표 5〉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목록 (2014년 7월 현재)

연번	법령명	제정연도	개정구분(연도)	연번	법령명	제정연도	개정구분(연도)
1	강원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0		58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2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		59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4)
3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60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1		61	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	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2013		62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2014	
6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0		63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2)
7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64	양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전부개정 (2013)
8	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		65	양평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1	전부개정 (2013)
9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전부개정 (2013)	66	여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0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67	연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3)
11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68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3)	69	영덕군예주문화예술회관예주작은도서관열람및대출규정	2005	
13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전부개정 (2013)	70	영암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3	
14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3)	71	영양군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2013	
15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전부개정 (2013)	72	영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0	
16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2011		73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7	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74	원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2011	
18	군포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75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9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2008		76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3)
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일부개정 (2010)	77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21	남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2013		78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1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79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	
23	대구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일부개정 (2014)	80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1	
24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81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2009	일부개정 (2011)
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82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전부개정 (2012)
26	대구광역시청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2010	일부개정 (2013)	83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		84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일부개정 (2013)
28	대전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		85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	일부개정 (2010)
29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8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2013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87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2012	
31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	2012		88	인천광역시남구 시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32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		89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2013	
33	마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90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2012	
34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	일부개정 (2014)	91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2013	
35	무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일부개정 (2012)	92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36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93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9	
37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		94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2)
38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95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8	
39	부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2013		96	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	
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97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	
4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98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	
42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2		99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2010	일부개정 (2013)
43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00	천안시 시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2)
44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0	일부개정 (2012)	101	청원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45	부산광역시 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2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1	
46	부안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2013		103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47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2		104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	일부개정 (2013)
48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		105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1	
49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		106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5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7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8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08	
5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2012		109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2014		110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5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111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9	
55	서울특별시 은평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2002	일부개정 (2010)	112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56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13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57	세종특별자치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		114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	

5.1 일반 현황

연도별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최초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2006년 제정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나, 조례 제정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부터다. 2008년 8건, 2009년 12건, 2010년 13건으로 제정 건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2011년 한해에는 24건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7건과 24건이 제정되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을 행정단위별로 구분해보면 <표 7>과 같다. 105건의 조례 중 특별시 및 광역시 5건, 도 7건, 시 40건, 군 21건, 구 32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8개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5곳이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안에 별도의 장을 두어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작은도서관을 언급한 광역 단위의 조례를 두고 있지 않다.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과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원, 진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두고 있다. 단,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통해 도 단위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군·구 단위에서 제정된 조례의 절대 건수는 높지만, 전체 행정단위 수와 비교했을 때, 각각의 조례 제정율은 54%, 24%, 46%에 그치고 있다.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등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표 8>과 같다. 조례가 가장 많이 제정된 단일 지역은 경기도로 14건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남도과 부산광역시를 포

<표 6> 연도별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 제정 현황

(단위: 건)

제정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조례	-	-	-	-	1	-	8	12	13	24	17	24	6	105
시행규칙	-	-	-	-	-	-	-	-	-	1	-	1	-	2
규정	1	-	-	1	-	-	-	1	2	-	1	-	1	7
계	1	-	-	1	1	-	8	13	15	25	18	25	7	114

* 2014년 7월 현재

<표 7> 행정단위별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 제정 현황

(단위: 건)

단위	특별시/광역시(8)	도(9)	시(74)	군(89)	구(69)	계
조례	5	7	40	21	32	105
조례 시행규칙	-	-	-	1	1	2
규정	1	-	1	1	4	7
계	6	7	41	23	37	114

* () 전국 행정단위 수

〈표 8〉 지역별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 제정 현황

(단위: 건)

지역	*	**	***	지역	*	**	***	지역	*	**	***	지역	*	**	***
강원도	5			전라북도	5			대구광역시	4		1	울산광역시	6	1	1
경기도	14			제주특별자치도	1			대전광역시	6			인천광역시	6		
경상남도	9		1	충청남도	6			부산광역시	8						
경상북도	8		1	충청북도	6			서울특별시	3		3				
전라남도	12	1		광주광역시	5			세종특별자치시	1						

* 조례, ** 조례 시행규칙, *** 규정

함한 경상남도의 조례는 각각 17건으로 동일하게 집계되어,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가장 많이 제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명칭에 따라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를 분류해보면 〈표 9〉와 같다. 105건의 조례 명칭에 사용된 키워드로는 운영, 지원, 진흥, 육성, 설치 등이 있으며, 단수 또는 복수의 키워드가 복합적으로 채택되고 있었다. 단순히 ‘작은도서관

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명한 것이 2건이며,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지원에 중점을 둔 조례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원의 대상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특정한 조례 2건이 포함된다.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진흥을 명칭의 키워드로 하는 조례는 9건이다. ‘작은도서관

〈표 9〉 명칭에 따른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 구분

유형	키워드별 구분	자치법규 명칭	건
조례 (105)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7
	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1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2
	진흥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1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8
	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설치-운영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
	설치-운영-지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49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시행규칙 (2)	설치-운영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진흥	작은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1
규정 (7)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4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1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1
	열람-대출	작은도서관 열람 및 대출 규정	1
계			114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설치'와 '운영'이라는 두 키워드를 명칭에 병렬적으로 사용한 조례가 30건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보태어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명칭에 채택한 조례가 총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육성'과 '지원'의 두 키워드를 채택한 조례가 4건이다.

조례 명칭에 나타난 각각의 개별 키워드 빈도를 살펴보면, '운영' 82회, '설치' 80회, '지원' 64회, '진흥' 9회, '육성' 4회 순으로 집계되었다. 개별 키워드 빈도의 압도적 차이를 통해 다수의 조례가 진흥과 육성보다는 설치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7건의 규정에는 6건의 운영 규정과 1건의 열람 및 대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지방자치단

체별로 국·실급 행정단위의 명칭이 상이하어, 가능한 과 단위의 명칭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누었고, 과 단위의 구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 단위 또는 담당자의 직무명을 따랐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과, 문화교육과 등 문화 분야 담당부서가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법규의 담당 부서로 지정된 경우가 32건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도서관 전담 부서와 도서관이 직접 담당 부서로 지정된 것은 각각 9건과 14건으로 총 23건에 그쳤다. 이는 도서관 관련 업무가 전담 부서로 분리되지 않고, 문화 행정 분야의 하위 단위로 속해 있는 현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획 분야 19건, 평생교육 분야 10건, 교육 분야 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법규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모두에서 담당 부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13건이었다.

<표 10> 작은도서관 관련 자치 법규의 담당 부서별 구분

분야	건	부서			
교육	9	교육도서관과 교육문화과	교육복지과 교육지원과(4)	교육체육과(2)	
평생교육	10	평생교육과(4)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2)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원	
기획	19	기획감사실 (8)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기획실	기획예산실(3) 기획조정실(2)	기획홍보실(2) 정책기획담당관
도서관 행정	9	도서관과(3)	(문예)도서관사업소(2)	도서관운영과(3)	도서관지원과
도서관	14	도서관(3)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7) 평생학습도서관	중앙도서관(2)	
문화	32	문화공보과 문화관광과(7)	문화관광정책실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과(10)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과(9) 문화체육관광과
기타	8	삶의질정책과 새마을문화과	시민봉사과 시설관리사업소	재정법무담당관 전략사업과	정책사업과 총무과
미지정	13	—			
계	114				

* ()은 빈도수. 빈도가 1회인 경우는 별도 표기를 생략함.

5.2 근거 법령

대부분의 조례는 공히 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한 105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각기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지방자치법」 등을 단수 또는 복수로 조합하여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11〉 참조).

조례의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18건을 제외한 87건 중 28.7%에 달하는 25건의 조례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여 상위 법령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는 도서관 발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제27조는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육성을, 제44조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 조항으로 보았을 때의 출현 빈도는 제4조 36건, 제27조 32건, 제44조 31건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한 묶음의 근거 법령으로 제시한 조례가 1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용된 「도서관법」 제31조와 제32조는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과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는 각각 작은도서관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근거 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12〉 참조).

5.3 정의

대부분의 조례는 제2조에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105건의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타 공공도서관과 구별되는 특

〈표 11〉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의 근거 상위 법령

법령명 및 조항	건	법령명 및 조항	건
「도서관법」	12	「도서관법」 제2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44조	1
「도서관법」 제4조	1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1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1	「도서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18
「도서관법」 제4조, 제32조	1	「작은도서관진흥법」	10
「도서관법」 제4조, 제44조	3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	6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25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 제5조 제2항	1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항, 제44조	3	「지방자치법」 제144조	2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작은도서관진흥법」	2	근거 법령 미제시	18
		계	105

〈표 12〉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근거한 상위 법령 조항

도서관법	제2조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 13〉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정의

분류			
공간 및 위치 (79)		접근 용이 (49)	생활공간 인접 (3)
		생활권역 (7)	생활공간 가까운 곳 (19)
		생활권에서 접근성 용이 (1)	
생활친화 시설 (53)		생활문화 공간 (2)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기반 시설 (14)
		생활친화적 문화 공간 (4)	독서문화 기반 시설 (1)
		생활친화적 문화 기반 시설 (32)	
소규모 (27)		소규모 도서관 (1)	규모가 작은 도서관 (1)
		소규모 독서문화 기반 시설 (7)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 (18)
이용자 (20)		이용자 중심 도서관 (20)	
기능 및 역할 (74)	서비스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11)	지식정보 생활 서비스 (1)
		지식정보 및 문화 서비스 (3)	지식정보 접근성 및 독서문화 향상 (2)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 서비스 (15)	
	프로그램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2)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 (9)
공동체	문화사랑방 역할 (10)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 (9)	
평생교육/학습	평생교육 (1)	평생학습 (11)	

* ()은 빈도수

성을 분석해보았다. 추출한 키워드는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 생활친화 시설, 소규모, 이용자, 그리고 기능과 역할이라는 5가지 내용 영역으로 구분하였다(〈표 13〉 참조).

첫째,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영역은 공간 및 위치에 관한 키워드들이었다. ‘접근 용이’가 압도적 빈도로 나타났고, 유사한 맥락으로 ‘생활공간 가까운 곳’, ‘생활권역’, ‘생활공간 인접’, ‘생활권에서 접근성 용이’ 등이 작은도서관을 특징짓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생활친화적 문화 또는 독서문화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로서 작은도서관을 규정하는 키워드가 접근성에 관한 키워드 다음의 빈도를 보였다. ‘생활친화적 문화 기반 시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기반 시설’, ‘생활친화적 문화 공간’, ‘생활문화 공간’, ‘독서문화 기반 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셋째는 규모에 관한 키워드들로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과 함께, ‘소규모’

또는 ‘규모’라는 단어를 포함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그 외 ‘이용자 중심 도서관’이 높은 빈도의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상의 키워드들을 종합하면 작은도서관은 ‘접근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 기반 시설로서 규모가 작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작은도서관에 주어진 기능과 역할로는 ‘지식정보 및 생활 문화 서비스’의 제공,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의 수행, ‘지역 주민 공동체 형성’, 그리고 ‘평생학습 또는 평생교육’ 등이 나타났다.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 평생학습의 제공 등이 모든 공공도서관의 기본 역할이라는 점에서 작은도서관 역시 공공도서관의 동일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작은도서관만의 특징을 들자면 지역사회의 문화사랑방으로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조례가 '작은도서관'을 공립 및 사립작은도서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명시하거나 이에 대한 구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조례는 공간 및 위치, 규모, 기능 및 역할에 있어 공립과 사립 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15건의 조례는 '민간운영' 또는 '사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이 사립작은도서관에 한정됨을 밝히고 있다. 이중 인천광역시 남구와 천안시 등이 제정한 2건의 조례는 명칭 자체를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고, 나머지 13건은 각 조례의 제2조에서 '민간운영'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다.

5.4 시설 및 장서 기준

연구대상 105건의 조례 중 19건은 작은도서관

의 시설 및 장서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86건 중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한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례가 23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 조례가 61건이다. 하지만 법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조례는 61건 중 단 9건뿐이다. 나머지 52건은 법의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부가적 규정을 두고 있다. '연간 5%부터 10%까지의 신규자료 구비', '어린이를 비롯한 전 연령을 고려한 장서 구비', '연령·주제 고려한 균형 있는 장서 구성',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 공간', '이용자의 보건·위생 고려한 환기·일조·채광이 잘 되는 구조', '화재·재해를 대비한 시설', '소음차단 시설', '지역공동체 역할을 위한 모임 공간 마련' 등 다수의 부가적 규정이 21가지 유형으로 조합되어 조례에 추가되어 있다(〈표 14〉 참조).

〈표 14〉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장서 기준

규정		건
시설·장서 기준 관련 규정 없음		19
『도서관법』보다 높은 기준	장서: 2천권 이상, 3천권 이상 열람석: 10석 이상, 15석 이상, 20석 이상 면적: 35, 49.5, 65, 66, 67, 70, 80, 82, 85㎡ 이상	23
『도서관법』 기준 그대로 준용		9
『도서관법』 기준과 동일	『도서관법』 기준 준용하면서 부가 규정 추가	52
	매년 [5% / 10%/] 이상의 신규자료 구비 어린이를 비롯한 전 연령을 고려한 장서 구비 연령·주제 고려한 균형있는 장서 구성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 공간 이용자의 보건·위생 고려한 환기·일조·채광이 잘 되는 구조 화재·재해를 대비한 시설 소음차단 시설 지역공동체 역할을 위한 모임공간 마련	61
『도서관법』 기준보다 낮은 기준		1
국립중앙도서관 시설 설치기준 적용		1
계		105

하지만 105건의 조례 중 13건은 '공공기관 내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은 예외로 한다(5건),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6건), '지역여건상 해당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건)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예외 규정을 둔 13건의 조례 중 9건은 법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였다. 예외 규정으로 인해 조례 상의 높은 시설 및 장서 기준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법의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정한 경우는 단 1건이다.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천원 이상의 장서 구비, 5석 이상의 열람석 설치, 최소 연면적 33㎡ 이상의 공용 시설을 작은도서관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이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낮은 기준이다. 그 외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설을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설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

5.5 운영인력의 자격요건

연구대상 105건의 조례 중 30건은 운영인력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나머지 85건 중 26건은 운영인력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세부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표 15〉 참조).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을 관장, 관리자, 운영자, 직원 등으로 호칭하며, '사서자격증 소지자',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아동, 청소년, 다문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의 다양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서 외에 교원,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자, 독서치료사, 보육교사, 소년지도자, 평생교육사, 학습지

〈표 15〉 조례에 나타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자격 요건

규정		건
운영인력 관련 규정 미비		30
운영인력 관련 규정 채택	세부 자격 요건 명시하지 않음	26
	필요 자격 및 교육	85
	기타	
	계	105

도사 등이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조례가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 선발)” 등의 표현으로 사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게 사서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또는 “도서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모호한 표현을 자격 요건과 함께 두고 있다. 더구나, 세부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 26건 중 11건과 세부자격 요건을 명시한 조례 2건, 총 13건의 조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를 관장 또는 운영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의 전문성과 적합성 대신 봉사 정신이 작은도서관 운영의 우선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6.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과제

이상의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제도의 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과 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법적 기준은 그 논리적 정합성을 되찾고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고의 한계를 넘어 진일보한 도서관운동을 지향하는 작은도서관의

의의가 무색하게, 작은도서관에 다시 문고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은 법령 상의 허용모순으로 귀결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정의한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는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 등장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법령의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도서관 중에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한 것을 도서관이라 부르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이를 도서관으로 부르며,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법적 용어로 등장시킨 2009년 「도서관법」의 개정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 삭제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문고의 작은도서관 명칭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렇게 문고는 작은도서관이 되었다.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공공도서관 최저기준³⁾의 건물면적 8분의 1, 열람석 10분의 1, 자료 3분의 1 수준이다. 작은도서관 역시 법이 정한 공공도서관의 하나지만 그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공공도서관의 가장 낮은 기준으로부터도 멀고 먼 곳에 자리잡고 있다. 문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이 기준은 작은도서관 개념의 도입 초기에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문고 사이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기대했던 여러 전문가의 기대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작은’은 단순

3)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가장 낮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봉사대상 인구 2만명 미만,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기본장서 3천 권 이상, 연간증서 3백 권 이상으로 정하고, 사립 공공도서관도 이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히 작다는 의미보다 포괄적 함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설과 자료의 법적 기준의 측면에서 '작은'은 'small'이라는 뜻일 뿐이다. 단순히 작다는 뜻으로 환원된다. 앞서 조례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작은도서관 정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접근 용이', 두 번째 키워드는 '생활친화'였다. 접근이 편리한 생활권역의 시설이다보니 규모가 작은 것이다. 규모가 작은 자체가 미덕은 아니다.

현행 『도서관법』의 기준은 현실조차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2012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의 평균 시설 및 자료는 법적 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평균 자료 수는 공공도서관의 최저 기준을 초과하였고, 공용면적과 열람석 수는 절반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전국 작은도서관의 3.3%에 해당되는 141개관에 불과하다. 시설 및 장서의 기준은 이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다수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앞서 논하였듯이 지난 3년간 작은도서관의 평균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 추이가 우려된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2010년 대비 60% 수준으로 축소된 2012년의 평균면적 111.8㎡는 아직도 법적 기준의 3배 규모이기 때문이다. 법의 기준이 작은도서관의 하향평준화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이미 다수의 조례가 『도서관법』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하거나, 법 기준을 준용하더라도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부가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법이 조례에게 배워야 할 차례다.

둘째, 전문성을 지닌 운영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사서 없는 도서관이다.⁴⁾ 『도서관법』으로부터 105건에 달하는 조례에 이르기까지 작은도서관에 사서 배치를 의무화한 법령은 단 하나도 없다. 사서의 배치가 작은도서관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서 없는 작은도서관에 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하다. 전문 인력의 배치는 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공립작은도서관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대다수의 조례는 관장과 운영자에게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영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기관이자 교육기관이기에 앞서 도서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는 독서치료, 평생교육, 유아교육, 청소년 상담 등의 전문가를 도서관의 협업 파트너가 아닌 운영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전문영역의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다. 단기간의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된다. 그도 아니라면 지역사회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만 갖추면 된다. 누구나 도서관의 관장이자 운영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정상적 상황이라 말할 수는 없다.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일은 전문 인력의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문 인력의 확보를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의 하나로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당장의 실행이 어렵다면,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 모든 작은도서관에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립작은도서관에 우선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마저

4) 2012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에서 사서자격을 가진 직원은 1개관 당 0.2명이다(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2013, 62).

도 불가능하다면, 순회사서 서비스 확대 실시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지원과 협력, 관리와 감독의 강화가 시급하다. 앞서 조례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기본 기능과 역할을 고스란히 부여받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과제까지를 지고 있다. 작은도서관이 규모로는 작을지언정 담아내야 할 기능과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공공도서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자료, 인력에 공공도서관의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되물게 된다.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기대한다면 온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립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여전히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직도 절반 가까운 사립작은도서관은 공공의 지원과 관리의 영역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을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하는 공립작은도서관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다. 지원과 협력은 공공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편익을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을 핑계로 간섭하여서도 아니 되며, 자율을 핑계로 관리, 감독의 사각으로 방치되어서도 아니 된다.

7. 맺는 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이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이전에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할 공공도서관이다. 이것이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마을사랑방이나 지역 공부방이라 부르지 않고 도서관이라 고집하여 부르는 이유다. 도서관으로의 기본을 충족하고 성실히 유지해나가지 않는 시설이라면 차라리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합당하다.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되는 것, 작은도서관의 첫 번째 임무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는 이를 위한 공적 약속이다. 약속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정확히 실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의 설립, 운영, 관리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조례에는 잘못된 약속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약속들이 수북하다. 대다수 조례는 전담 부서가 아닌 단위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및 장서의 낮은 기준은 예외 규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한 운영은 투철한 봉사정신을 앞세워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은 힘없는 임의조항과 훈시조항 속에 간혀 있다.

이제는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작은도서관을 전담할 부서를 만들고, 시설과 장서 기준을 예외 규정 없이 바로잡아야 하며,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것은, 그것이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대한 학술적 그리고 실천적 논의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영인, 배지은, 이예지, 한상길. 2013.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199-207.
- [2] 김영석. 2007. 우리나라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방안 연구: 영국 작은 공공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29-48.
- [3] 김영석. 2008.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 건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J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429-448.
- [4] 김세훈, 조현성, 이재희, 정현대, 최원태. 2006. 『작은도서관 분관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5] 김소희. 2007.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서울: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 [6] 김재철. 2013. 마을공동체 구심체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FOCUS 광주』. 광주: 광주발전연구원.
- [7] 김준. 2006. '작은도서관 개념'에 대한 이해. 『도서관계』, vol.140.
- [8] 김홍렬. 2010a.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191-209.
- [9] 김홍렬. 2010b. 전북지역 작은도서관의 현 단계와 기능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77-98.
- [10] 김홍렬. 2011.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51-67.
- [11] 나수미. 1995. 책과 사람의 나눔이 있는 곳 작은도서관 전국협의회. 『월간 말』, 105: 244-247.
- [12] 노동조, 박경숙. 2013. 기부금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71-187.
- [13]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2013. 『2012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14] 박미라, 이응봉. 2010. 작은도서관 운동의 현단계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제17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3-131.
- [15] 박영숙. 2003. 작은도서관에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느티나무도서관. 『국토』, 260: 132-137.
- [16] 박영숙. 2005.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도서관 이야기: 작은도서관 사례. 『창비어린이』, 가을호, 3(3): 68-76.

- [17] 박영애, 이재윤. 2010. 대출 및 상호대차 통계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장서 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333-356.
- [18] 안인자, 윤소영, 차성중. 2011. 작은도서관 통계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75-393.
- [19] 안찬수. 2006. 문고가 아닌 어엿한 도서관으로! 『도서관계』, 141: 12.
- [20] 양병훈. 2012.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89-309.
- [21] 양영균. 2012.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2): 35-67.
- [22] 양재한. 2008.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운동의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7-52.
- [23] 유양근, 박송이. 2010.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75-192.
- [24] 윤명희, 이영옥, 심승희, 황수경, 정종모. 2011. 『경기도도서관총서6: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25] 이승원. 2011.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연구: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23-241.
- [26] 이연옥. 2005. 현단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309-327.
- [27] 이용남. 2002. 마을문고운동 추진 전략과 형태에 관한 분석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91-109.
- [28] 이재희. 2006.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국내 사례”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39-45. 국립중앙도서관.
- [29] 이정호. 2012. 작은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특성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 2012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77-96.
- [30] 이정호. 2013. 작은도서관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천지역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149-169.
- [31] 이진우. 2006. 작은도서관 설립운동의 실체와 공공도서관과의 관련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155-177.
- [32] 정다솜, 이은진. 2013.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 지역을 중심으로. 『제20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51-155.
- [33] 장덕현. 2011. 작은도서관 장서개발 과정에 관한 현상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203-221.

- [34] 장지숙,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2010.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 중장기 계획과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15-28.
- [35] 정현태. 2006.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활성화 방안: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공청회 자료.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 217-253.
- [36] 정현태, 조미아, 이진우, 박영애. 2010. 『생활밀착형 사립작은도서관 연계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37] 정희수. 2001. 작은도서관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이웃이 되어가는 - 동넙감리교회. 『새 가정』, 48(520): 92-97.
- [38] 조미아, 변현주, 김보일. 2013. 운영진단을 통한 유형별 작은도서관 사례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93-314.
- [39] 조윤희. 2010. 공공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77-197.
- [40] 조은길, 장우석, 손광호. 2010. 작은도서관의 공간특성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살내디지인 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74-178.
- [41] 차성중, 안인자, 윤소영. 2012.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153-178.
- [42] 천경배. 1994. 인천에 '작은도서관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해문화』, 2(3): 31-33.
- [43] 최미순. 2006. '미국의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협력.' 『작은도서관 - 공공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방안 국제세미나 자료집』. 국립중앙도서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44] 한상우, 오현석. 2011. 경남지역 작은도서관 운영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포커스』, 2011-10: 1-4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ang, Yeong-In, Bae, Ji-Eun, Lee, Ye-Ji and Han, Sang-Gil. 2013. "Analysis of a small library operations and Revitalization: Focused on the case in Anyang." *201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ummer Conference*, 199-207.
- [2] Kim, Young-Seok. 2007. "A Study on the Effective Enhancement of the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in Korea: Focusing on the Operation of Small Public Libraries in the U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29-48.
- [3] Kim, Young-Seok. 2008. A Study on Building a Small-Size Public Library in the Area of the Reconstruction of Old Apartment Complex: A Case Study of J Apartment Complex in Seou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429-448.

- [4] Kim, Se-Hun, Jo, Hyeon-Seong, Lee, Jae-Hui, Jeong, Hyeon-Tae and Choi, Won-Tae. 2006. *The Construction Strategies of a small library branches Systems*.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5] Kim, So-Hee. 2007. "A small library in our neighborhood, which have the human touch." In: *Our Neighborhood's small library*. Seoul: Korean Children Library Association.
- [6] Kim, Jae-Cheol. 2013. "A revitalization strategy for small libraries as a village community." *FOCUS Gwangju*. Gwangju: Gwangju Development Institute.
- [7] Kim, Jun. 2006.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mall libraries." *Library World*, vol.140.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8] Kim, Hong-Ryul. 2010a. "Analytical Study on the Ordinance for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191-209.
- [9] Kim, Hong-Ryul. 2010b. "Analysis and Solution of Small Libraries in Jeon-buk Provi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1): 77-98.
- [10] Kim, Hong-Ryul. 2011. "Analytical Study o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f Administrators in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51-67.
- [11] Na, Su-Mi. 1995. "The Small library Nationwide Association, where books and peoples are shared." *Monthly Mal*, 105: 244-247.
- [12] Noh, Dong-Jo and Park, Kyung-Sook. 2013. "A Study on the Vitalization Methods of Small Libraries Using Dona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71-187.
- [1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ibrary and Museum Policy Division. 2013. 2012 Nationwide Survey reports on small libraries' management.
- [14] Park, Mi-Ra and Lee, Eung-Bong. 2010. "A Study on the Present Stage and Development Strategy Small Libraries Movement in Daejeon." *The 17th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123-131.
- [15] Bak, Yeong-Suk. 2003. "People who create village community culture at a library: Gyeonggi-do Yong-In City Suji-Eup Zelko Library." *Planning and Policy*, 260: 132-137.
- [16] Bak, Yeong-Suk. 2005. Library talk with the children growing up: a small library case. *Chang-Bi Children*, 3(3): 68-76.
- [17] Park, Young-Ae and Lee, Jae-Yun. 2010. "An Experimental Study on Small Library Collection Evaluation Utilizing Circulation Statistics and Interlibrary Loan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333-356.

- [18] Ahn, In-Ja, Yoon, So-Young and Cha, Sung-Jong. 2011. "A Study to Improve the Statistical Indicators of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375-393.
- [19] Ahn, Chan-Su. 2006. "Mungoga Anin Eoyeotan Doseogwaneuro!" *Library World*, Vol.141: 12.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20] Yang, Byeung-Hoon. 2012.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Cultural Programs in Small Libraries: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1): 289-309.
- [21] Yang, Yeong-Gyun. 2012. "Building an urban community and small libraries: a case of Yong-in city." *Korean Studies Quarterly*, 35(2): 35-67.
- [22] Yang, Jae-Han. 2008. "A Study on the Processes of Small Libraries Changing Sociological Role and Its Direction of Movement in Mas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7-52.
- [23] You, Yang-Keun and Park, Song-Yi.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Small Libraries: Focus o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1): 175-192.
- [24] Yoon, Myeong-Hee, Lee, Yeong-Ok, Shim, Seung-Hee, Hwang, Su-Gyeong and Jeong, Jong-Mo. 2011. *Gyeong-gi-Do Library Edition 6: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ublic library, and a small library*.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25] Lee, Seung-Won. 2011. "A Stud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Libraries: Analysis on the Ordina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23-241.
- [26] Lee, Yeon-Ok. 2005. "A study on the children Library Movement of the Pres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309-327.
- [27] Lee, Yong-Nam. 2002. An Analysis on the Strategies and Managing Behaviors of the Village Mini-Library Movement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1): 91-109.
- [28] Lee, Jae-Hee. 2006. "A small library-public library cooperation model domestic case." In *International Seminar f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Small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39-4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29] Lee, Jeong-Ho. 2012.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Network with Small Libraries."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2 Autumn Conference*, 77-96.

- [30] Lee, Jeong-Ho. 2013.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Network with Small Libraries: Focus on Bucheon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149-169.
- [31] Lee, Jin-Woo. 2006. "An establishing movement of a small libraries and a relevance of public librarie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Winter Conference*, 155-177.
- [32] Jeong, Da-Som and Lee, Eun-Jin. 2013. "A Study on Interlibrary Loan Services in Small Libraries: Focused on Seoul Province." *The 20th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151-155.
- [33] Chang, D. H. 2011. "A Descriptive Study on the Collection Development Processes in Smal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4): 203-221.
- [34] Jang, Ji-Suk, Song, Kyeong-Jin, Lee, Jin-Woo and Cha, Mi-Kyeong. 2010.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Long-Term Planning and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2): 15-28.
- [35] Jeong, Hyun-Tae. 2006. "Revitalization of Small Library Project: 'A study on long term development strategies for small library' Hearing Resources."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nference*, 21: 217-253.
- [36] Jeong, Hyun-Tae, Cho, Mi-Ah, Lee, Jin-Woo and Park, Young-Ae. 2010. *A study on promotion strategies of private small library*. Seoul: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37] Jeong, Hee-Su. 2001. "A small library in the community are becoming good neighbors - Dongnyeok Methodist Church." *New Family*, 48(520): 92-97.
- [38] Cho, Mi-Ah, Byeon, Hyeon-Ju and Kim, Bo-Li. 2013. "A Case Study on Measures to Revitalize Small Libraries of the Type through Operational Diagnost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93-314.
- [39] Cho, Yoon-Hee. 2010.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Network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177-197.
- [40] Cho, Eun-Kil, Jang, Woo-Seok and Son, Kwang-Ho. 2010.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Using Condition of Small Library."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10 Autumn Conference*, 174-178.
- [41] Cha, Sung-Jong, Ahn, In-Ja and Yoon, So-Young. 2012. "A Study on Nationwide Survey and Analysis of Operating Small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153-178.
- [42] Cheon, Gyeong-Bae. 1994. "Small library movement is unfolding in Incheon." *Hwangae*

- Review*, 2(3): 31-33.
- [43] Choi, Mi-soon. 2006.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libraries and small libraries." In *The International Seminar f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Small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44] Han, Sang-Wook and Oh, Hyun-Suk. 2011. "Operational status and active policy measures of Small library in Gyeongnam." *Policy Focus*. 2011-10: 1-44.